

형벌을 받은 전쟁포로는 다른 전쟁포로들과 달리 대우받아서 아니된다.

제 4 절 외국인 거주자의 기소

798. 적용법규 (G. IV, 38; G. P. I, 75)

외국인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평시에 그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규칙에 복종한다.

799. 피억류자 (G. IV, 117-126; G. P. I, 75)

억류된 외국인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형사처벌 절차는 전쟁포로에 대한 그것과 유사하다.

제 9 편 점령

서 론

이 편에서는 점령지에 관한 전쟁법 규정중 군사적 관련측면, 즉 점령의 본질과 점령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투행위 및 그에 대한 통제 등을 다룬다.

제 1 장 점령법은 관계되는 정의와 점령지에서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제 2 장 점령에 관한 특별규정은 점령지의 행정과 민간주민의 처우 및 형사문제에 관한 것이다.

제 3 장 점령의 통제는 가능한 저항운동을 포함하여, 관련된 기구와 사람들로 하여금 적절한 활동과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점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점령지 당국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것이다.

제 4 장 점령지에서의 전투행위는 훈련된 군대, 적용가능한 특정 전쟁법 조문, 그리고 양쪽이 취할 수 있는 통제수단에 관한 것이다.

제 1 장 점령법

제 1 절 정의

800. 점령지 (H. IV. R. 42)

어떤 영역이 적국 군대의 권력하에 사실상 놓여졌을 때 점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점령은 이러한 권력이 확립되고 실행될 수 있는 영역까지만 미친다.

801. 점령에 대한 저항불가 (G. I, 2 G. II, 2 G. III, 2 G. IV, 2)

비록 점령에 대해 무력저항이 없다 하더라도 그 영역은 점령지로 간주된다.

802. 침략 (H. IV. R. 42)

어떤 영역 위에 적국 군대가 머물거나 전투중에 있지만 아직 적국의 권력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침략을 당한 것일 뿐 점령당한 것은 아니다. 작전행위에 관한 규정(제5편 참조)과 전투행위 수칙에 관한 규정(제6편 참조)은 전투행위에 적용되고, 민간당국 및 민간인들과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803. 법적 지위 (G. P. I, 4)

어떤 영역에 대한 점령이나 전쟁법의 적용은 그 영역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2 절 책임

804. 점령국 (H. IV. R. 43)

합법적인 국가권력이 점령국의 수중에 들어간 경우 점령국은 가능한 한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회복하고 확보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805. 군대 (G. P. I, 86, 87)

점령국 군대는 그들의 임무수행중 전쟁법을 준수해야 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

806. 점령지 거주자 (G. IV, 5)

전쟁법은 점령지내에서 점령국과 거주자간의 최소한의 협력을 요구한다. 점령법에 의해 허용된 보호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점령지 거주자는 점령국의 안전에 적대적인 행동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 2 장 점령에 관한 특별규정

제 1 절 행정업무

807. 원칙 (H. IV, 43, 48 G. IV, 51, 54, 64)

원칙적으로 점령국은 점령지에 대해 점령 전과 같은 행정기능을 허용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808. 현존하는 법체제 유지 (H. IV. R. 43)

점령국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역안에서 시행중인 법률을 존중하여야 한다.

- 1) 완전히 제거된 경우
- 2) 어떤 법률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예: 차별적인 법률)

809. 공무원, 법관 (G. IV, 54)

점령국은 공무원 또는 법관들의 지위를 변경할 수 없다. 이 금지는 공무원들을 그들의 직책으로부터 해임시킬 수 있는 점령국의 권리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점령국은 공무원이나 법관들이 양심상의 이유로 그들의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경우 제재조치 또는 어떠한 강요나 차별조치도 취할 수 없다.

810. 경찰 (G. IV, 51)

점령지의 경찰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당하지 않는다.

- 1) 주민을 군사적 목적으로 채용하기 위한 명령의 집행을 원조하는 일
- 2) 적대행위에 직접 참가하는 일

811. 징발: 제한 (G. IV, 55, 57 G. P. I, 14)

점령국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징발할 수 있다.

- 1) 의무요원의 서비스
- 2) 의무시설, 의무수송수단 및 의무보급품
- 3) 식료품

이러한 징발은 점령군과 행정요원들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고, 민간 주민들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충족될 때에만 허용된다.

812. 징발: 대가 지불 (H. IV. R, 52 G. IV, 55)

현물기부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금으로 그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813. 세금징수 (H. IV. R, 48)

점령국은 적법한 정부에 의하여 그 국가의 이익을 위해 부과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점령지의 행정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814. 세금 외의 금전기부 (H. IV. R, 49)

통상의 세금에 더하여 점령국은 점령군 또는 점령지의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만 금전기부를 받을 수 있다.

815. 의무지원 (G. IV, 56)

점령국은 그 능력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점령지 당국과 협력하여 병원, 공공보건 및 위생기능을 보장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816. 보급일반 (G. IV, 55)

점령국은 주민들에 대한 음식과 의무보급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점령국은, 특히, 점령지의 자원이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음식물과 의무창고 및 다른 물품들을 공급하여야 한다.

817. 민방위 (G. P. I, 63)

민방위조직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구성원들은 그들의 적정한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민방위조직 또는 구성원의 변경, 점령국 국민 또는 점령국의 이익에 대한 우선권 등)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818. 문화재 (H. CP, 5)

점령국은 점령지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그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점령국은 점령지내에 위치하고 있고 군작전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문화재를 유지 보호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절 민간주민의 상황

819. 원칙 (G. P. I, 75)

제2편 제3장 제3절의 기본적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은 침공을 당한 지역 또는 점령지의 주민에게 적용된다.

820. 권리침해 불가 (G. IV, 47)

점령지의 주민들은, 어떠한 경우이든, 또는 어떤 형태로든, 그 지역이 점령되거나 복속됨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변화에 의하여 그들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821. 점령지의 군대 구성원 (G. III, 4)

해체된 점령지의 군대 구성원은 억류될 수 있다. 이 경우 그들은 포로로 취급된다(제8편 제2장 제1절 참조).

822. 위험한 지역 (G. IV, 49)

점령국은 주민의 안전 또는 긴급한 군사상의 이유 때문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령지내의 거주자들을 전쟁의 위험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에 억류하여서는 아니된다.

823. 재산의 존중 (H. IV. R, 46, 55)

점령국은 개인의 재산을 존중하여야 한다.

824. 종교 (H. IV. R, 46 G. IV, 58)

종교적 신념과 관행은 존중되어야 한다. 종교요원은 점령국의 도움으로 그 종교집단 구성원에게 정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825. 징병금지 (H. IV. R, 23 G. IV, 51)

점령국은 점령지내의 주민들에게 점령군 또는 그 지원군에 입대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자발적 지원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압력이나 선전도 허용되지 않는다.

826. 노동: 원칙 (G. IV, 51)

점령국은 다음의 경우에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점령지 주민들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

1) 점령군의 필요를 위해

2) 공공사업을 위해

3) 점령지 주민의 급양, 대피, 의복, 교통 또는 건강을 위해

18세 미만의 사람은 노동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827. 노동: 군사행동참가 금지 (G. IV, 51)

점령지의 주민들은 그들이 군사행동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다.

828. 노동: 조건 (G. IV, 51)

노무에 징발된 사람들은 가능한한 종전의 근무장소에서 일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조건에 관하여 점령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은 다른 통상의 조건들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829. 구호 (G. IV, 23, 59-61 G. P. I, 81)

점령국은 민간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해외로부터 행해진 구호행위를 받아들이고 그 시행을 촉진하여야 한다(예: 음식물, 의복, 의무보급품, 종교물 등의 공급).

830. 국가적십자사와 다른 구호기관들 (G. IV, 63 G. P. I, 81)

점령국은, 긴급한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취하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조치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가적십자사, 적신월사(赤新月社)와 기타 적법하게 승인된 인도적 단체들이 활동을 계속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점령국은 이러한 단체들의 인도적 활동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조직 또는 구성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 3 절 민간인의 이동

831. 점령지로의 주민이송 (G. IV, 49)

점령국은 그 민간주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방하거나 점령지역으로 이송할 수 없다.

832. 영역을 떠날 수 있는 권리 (G. IV, 48)

점령지 주민들은 그 점령지를 떠나기 원할 경우, 그것이 점령국의 안전에 반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33. 추방의 금지 (G. IV, 49)

점령지로부터 점령국의 영역 또는 피점령여부를 불문하고 제3국의 영역으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강제이송 또는 추방하는 것은 그 동기를 불문하고 금지된다.

834. 소개(疏開): 원칙 (G. IV, 49)

점령국은 주민의 안전상 또는 다른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필요한 경우 일정지역을 전부 또는 일부 소개할 수 있다.

835. 소개: 시간과 공간상의 한계 (G. IV, 49)

소개는 물적 이유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을 점령지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하여 소개된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적대행위가 종료되는 즉시 각자의 가정으로 되돌려져야 한다.

836. 소개: 조건 (G. IV, 49)

점령국은 소개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소개되는 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적당한 시설을 설치할 것과 그 이동이 위생, 보건, 안전 및 급식에 대해 만족할 만한 조건하에서 행하여질 것 및 동일 가족의 구성원들이 이산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4 절 거주자에 대한 보안조치

837. 주거지정, 억류: 원칙 (G. IV, 78)

점령지내의 거주자는 안전상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주거지정 또는 억류 이상의 조치를 당할 수 없다.

838. 주거지정, 억류: 결정 (G. IV, 78)

주거지정 또는 억류는 전시 민간인보호에 관한 1949년도 제네바협약의 조항에 합치되게 점령국이 정한 정규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상소와 정기적인 재심사가 허용되어야 한다.

839. 억류: 포로와 유사한 대우 (G. IV, 79-135)

민간인 피억류자의 대우에 관한 규정은 포로와 포로수용소에 관한 것과 유사하며, 비점령지역에서의 외국 민간인 피억류자에 대한 것과 동

일하다(제8편 제2장 제1절 및 제3장 제2절 참조).

제 5 절 형벌관련사항

840. 적용법령 (G. IV, 64)

점령지의 형벌법령은 유효하다.

다만 점령국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법령을 폐지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1) 점령국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 2) 전시 민간인보호에 관한 1949년도 제네바협약의 적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841. 새로운 형벌조항: 원칙 (G. IV, 64)

점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수적인 새로운 형벌조항을 공포할 수 있다.

- 1) 이익보호국의 전시 민간인보호에 관한 1949년도 제네바협약에 의한 의무수행
- 2) 당해지역의 질서있는 통치유지
- 3) 이익보호국의 안전보장

842. 새로운 형벌조항: 적용 (G. IV, 65)

점령국은 거주자들의 언어로써 새로운 형벌조항을 발간하여야 한다. 이러한 형벌조항의 효력은 소급할 수 없다.

843. 점령지 법원 (G. IV, 64)

위에서 언급한 조치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점령지 법원은 점령 전에 시행되던 법에 의해 다루어지는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계속 그 기능을 수행한다.

844. 권한있는 법원 (G. IV, 66)

점령국에 의해 공포된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점령국

은 피고인을 정당하게 구성되고, 비정치적 비군사적인 법원에 인도할 수 있다. 이러한 법원은 점령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845. 점령 전에 행한 행위 (G. IV, 70)
거주자는, 전쟁법 위반을 제외하고는, 점령전 또는 점령이 일시중단된 동안에 행한 행위로 인해 기소당하지 않는다.

846. 형벌의 비례성 (G. IV, 68)
순전히 점령국을 해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한 형은 엄격히 비례의 원칙을 따라야 하고 실제로 초래된 피해정도를 지나쳐서는 안된다.

847. 사형 (G. IV, 68)
점령국의 형벌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만 거주자에 대해 사형을 과할 수 있다.

- 1) 간첩죄
- 2) 점령국 군대의 시설에 대한 중대한 테업
- 3)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는 고의적인 위반행위

그러나, 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점령지에서 점령전에 시행되던 법에 의해서도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848. 형사처벌 절차 (G. IV, 71-76)
점령지 거주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는 포로에 대한 것과 유사하며, 비 점령지 내의 외국 민간인 피억류자에 관한 그것과 동일하다(제8편 제4장 제3절, 제4절 참조).

제 3 장 점령의 통제

제 1 절 통제원칙

849. 원칙
충분히 효과를 발하기 위하여, 점령법은 점령국과 점령지의 당국간에 적당한 적용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예: 약혼에 관한 규정양식 등).

850. 변화가능한 상황
점령이 계속되는 한, 점령국 및 점령군의 행위와 점령지 당국 및 주민의 행위 여하에 따라 점령지의 상황은 변화될 수 있다(예: 다소 평화적인 공존으로부터 긴장과 무력충돌유사의 상황으로 인도할 수 있는 폭력의 증가까지).

851. 점령정책의 필요성
특정의 가변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통제수단이 취해져야 한다. 그 조치들은 점령지내 및 주변의 상황 전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점령측과 피점령측은 관련된 모든 기구와 사람의 행동 및 행위의 통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점령정책을 필요로 한다. 양쪽 점령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점령법의 적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 2 절 점령국의 조치

852. 점령정책
점령국의 점령정책은 점령국의 의무와 점령지 당국 및 거주자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853. 지침
점령당국이 특수한 상황하에서만 취할 수 있는 조치(예: 그들 자신의 안전, 점령지의 질서있는 통치를 위한 조치)의 적용을 위한 지침과 지시가 점령당국에 내려져야 한다.

제 3 절 점령지 당국과 거주자의 조치

854. 점령정책

점령지 당국의 점령정책은 지속적이고 엄격한 통제하에서 점령국에 대한 점령지 거주자의 행위와 행동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예: 통제되지 않은 폭력과 도발행위의 배제 등)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855. 지침

점령지 당국과 거주자가 특별한 분야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와 행동(예: 공공행정과 서비스를 위한 점령당국과의 협력, 점령당국의 안전을 위한 조치의 적용)을 위한 지침과 지시가 내려져야 한다.

856. 저항운동 (G. III, 4 G.P. I, 43, 44)

점령지 거주자들은 저항운동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저항운동은 군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구성원들은 전투원이다. 따라서 그들은 전투행위에 참여할 수 있으며, 포로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제 4 장 점령지에서의 전투행위

857. 원칙

점령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투행위는 민간주민들을 위협하게 만든다(예: 보복행위에의 노출, 전쟁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의 강요). 따라서 전투행위와 그 상승작용을 통제하에 두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다.

858. 적용법 (H. IV, R, 42)

작전준비, 작전수행 및 계속적인 조치들에 관한 전쟁법 조항은 점령지에서 발생하는 전투행위에도 적용된다.

859. 양측이 발하는 지침

점령당국과 피점령당국이 발하는 특별지침과 조치(예: 군사목표물과 민간인 및 민간목적물에 대한 명확한 차별을 겨냥한 행위준칙, 사용되는 전술과 전투수단, 전략루트와 보급경로, 고립되어 작전을 수행하는 소규모부대에 대한 특별지침, 균형원칙의 존중 등)는 각 당사국 군대의 적절한 행동을 규율한다.

860. 공개리의 정보탐지 (G.P. I, 46)

점령지에서 전투원 신분을 숨기지 않고 정보를 탐지하는 전투원은 포로의 지위를 갖는다.

861. 정보탐지: 전투원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거주자 (G.P. I, 46)

점령지 거주자인 전투원으로서 위장행위로 또는 고의로 은밀하게 정보를 탐지하는 자는,

- 1) 간첩행위에 종사하지 않은 동안에 체포된 경우에는 포로의 신분을 갖게 되고,
- 2) 간첩행위에 종사하는 동안에 체포된 경우에는 포로의 지위를 상실하고 간첩으로 취급된다.

862. 정보탐지: 전투원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비거주자 (G.P. I, 46)

점령지 거주자가 아닌 전투원으로서 위장행위로 또는 고의로 은밀하게 정보를 탐지하는 자는,

- 1) 그 소속군대에 합류한 뒤 체포된 경우에는 포로의 지위를 갖고,
- 2) 그 소속군대에 도달하기 전에 체포된 경우는 포로의 신분을 잃고 간첩으로 취급된다.

제 10 편 중립

서 론

이 편에서는 중립에 관한 전쟁법 조항의 군사적 관련사항을 다루는데, 주로 중립에 관한 필수적인 것과 중립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투행위와 그에 대한 통제 등이다.

제 1 장 중립법은 관련 개념과 교전국 및 중립국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제 2 장 중립에 관한 특별조항은 적대적인 작전, 중립 영역에의 접근에 대한 중립국의 규율권, 일시적인 접근, 교전국 군대의 억류 등에 관한 것이다.

제 3 장 중립의 통제는 관련된 기구와 사람의 적절한 행위와 행동을 확보하기 위해 중립국과 교전국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것이다.

제 4 장 중립영역에서의 전투행위는 중립영역에서 전투행위로 이끌 수 있는 상황과 중립국 및 관련 교전국이 취할 수 있는 통제수단에 관한 것이다.

제 1 장 중립법

제 1 절 정의

863. 중립국가

주어진 무력충돌에 대해 공식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국가는 “중립국가”이다.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은 경우 중립은 어느 국가의 사실상의 행위로부터 초래될 수도 있다. 지상에서 중립법은 비교전국(非交戰國)과 인접하는 교전당사국 간에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864. 중립영역 (H.V,1 H.XIII,1)

중립국의 국가영역은 침해할 수 없다. 국가영역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된다.

- 1) 중립국의 영토
- 2) 중립국의 영해
- 3) 중립국의 영공

865. 중립국인(中立國人) (H.V,16-18)

중립국의 국민은 중립국인이다. 그들은 개별적으로 교전당사국의 군대에 합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 중립의 신분을 잃는다.

제 2 절 책임

866. 교전국 (H.V,2-4 H.XIII,2)

교전국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군대와 전투수단을 가지고 중립국의 영역으로 침투하는 행위
- 2) 군대 또는 군수송수단으로 중립영역을 통과하는 행위
- 3) 중립영역에서 전투원을 모집하거나 훈련시키는 행위
- 4) 중립영토에 군사목적용 위한 전화통신수단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67. 중립국: 의무 (H.V,5,6,9,10 H.XIII,25)

중립국은,

- 1) 그의 중립존증을 보장하여야 하고,
- 2) 반대 교전당사국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 3) 필요한 경우 무력을 사용하여서라도 그 중립을 해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

중립국은 교전당사국의 군대내에서 복무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868. 중립국: 특별조치 (H.V, 7-9)

중립국은,

- 1) 교전당사국의 이익을 위해, 군용물의 수출이나 운송을 금지하고,
- 2) 교전당사국에 의한 전화통신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며,
- 3) 중립영역에의 접근을 규제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반대 교전당사국에 대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869. 중립국: 교전국의 이익을 위한 활동

중립국은 교전당사국 및 그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비적대적인 활동을 수행하거나 촉진시킬 수 있다(예: 이익보호국, 군의무 또는 민간의무수단에 의한 협력의 제공, 중립항구에서의 전함의 수리, 교전국 군대의 역류, 구조활동 등).

제 2 장 중립에 관한 특별조항

제 1 절 전투작전지역

870. 배제지대와 그 유사지역
중립국은 교전당사국에 의하여 선언된 배제지대와 그 유사지역을 모두 인정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871. 중립국 선박의 자기책임하 항해

중립국 선박과 항공기는 공해 또는 공공(公空)이라 할지라도 군사작전 구역, 배제지대 및 그 유사지역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 2 절 중립영역에의 접근에 관한 일반원칙

872. 원칙

중립국은 해협 또는 군도해(群島海)에 대한 특별규제를 제외하고는, 그 국가영역, 특히 그 영수(領水)와 영공에 대한 접근을, 자유로이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 있다.

873. 교전당사국에 대한 통고: 일반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규칙은 교전당사국에게 널리 통보되어야 한다.

874. 교전당사국에 대한 통고: 특별

특별한 경우에 대한 규칙과 수권(授權)은 관련된 당국과 부대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 3 절 중립영역에의 일시적 접근

875. 지상: 의무수송 (H.V, 14)

중립국은 교전당사국의 부상자와 병자를 실은 의무수송수단이 전투원이거나 군용물을 운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영토를 통과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안전 및 통제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876. 해상: 영해 (H. XIII, 10)

교전당사국 군함이 단순히 중립국의 영해를 통과하는 것(예: 일시적 통과, 공해로부터 항구로 가는 통로와 그 반대의 경우 등)만으로는 그 중립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단순통과는 항해상의 일상적인 정지이며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사태에 의해 불가피하게 된 정지로 인정된다.

877. 해상: 항구 (H. XIII, 12-14)
교전당사국의 군함은 수리, 식량보급 및 연료주입을 위해 중립항에의 입항이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의 파손 또는 기상조건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24 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를 수 없다.

878. 해상: 의무선박 (G. II, 32 G.P. I, 22, 23)
교전당사국의 의무선박은 중립국 영해와 항구에서 군함에 과해지는 제한에 복종하지 않는다.

879. 공중: 원칙
교전당사국의 항공기는 중립국에 의해 그 공중의 사용을 위해 과해진 제한을 존중하고 착륙 또는 착수(着水)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880. 공중: 착륙한 군용항공기
교전당사국의 군용항공기는 전투능력을 상실한 경우 중립영역에 착륙하거나 착수하도록 허가될 수 있다.

881. 공중: 의무항공기 (G.P. I, 31)
의무항공기는 사전 합의에 의해서만 중립국 영공을 비행할 수 있다. 사전 합의없이 비행하는 항공기는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항공기는 검열받을 수 있다. 검열결과 비의무항공기임이 밝혀질 경우에는 나포될 수 있다.

제 4 절 교전당사국 군대의 억류

882. 원칙 (H. V, 11)
중립국은 교전당사국 군대의 부대와 구성원이 그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883. 중립국 영토에 들어온 교전국 군대 (H. V, 11 G. II, 15)
중립국 영토에 들어온 (또는 중립국 군함이나 군용기에 수용된) 교전국 군대 구성원은 적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억류되어야 한다.

884. 중립국 영토에서 포획된 교전국 군대 (H. V, 11)
중립국 영토에서 포획된 교전국 군대 구성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억류되어야 한다.

885. 도주한 포로 (H. V, 13)
도주한 포로로서 중립국에 들어오도록 허용된 자는 자유로이 놓아두어야 한다. 중립국이 그들의 체제를 용인하는 경우, 중립국은 그들에게 거주지를 배정할 수 있다.

886. 억류된 교전국 군대에 의해 감금된 포로 (H. V, 13)
중립국 영토에 들어오도록 허용된 교전국 군대의 부대에 의해 감금된 포로는 위의 도주포로와 같이 취급된다.

887. 억류된 자들에 대한 대우 (H. V, 12 G. III, 4)
중립국에 억류된 교전국 군대 구성원들은 적어도 포로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제8편 제2장 제1절 참조). 원칙적으로, 적대행위 종료시 억류에 의해 발생한 비용은 중립국에 변상하여야 한다.

888. 포로의 중립국에의 이송 (G. III, 109-111)
중립국과 교전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포로를 중립국 영토로 옮겨 억류할 수 있다(예: 부상자와 병자,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자).

889. 의무지원 (H. V, 15 G. I, 4 G. II, 5)
부상자, 병자, 난선자와 관련한 전쟁법 조항은 중립국 영토에 억류된 구성원들에게도 적용된다(제8편 제2장 제2절 참조).

890. 포로의 지위를 갖는 민간인 (G. III, 4)
포로의 지위를 갖고 있는 민간인은,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한, 억류된 교전국 군대 구성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891. 군용물
억류된 교전당사국 군대의 부대 및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군용물은 적 대행위 종료시까지 중립국에 의해 유치되어야 한다.

제 3 장 중립의 통제

제 1 절 통제원칙

892. 원칙
충분히 효력을 발하기 위하여, 중립법은 교전당사국과 중립국 양측에 의하여 적절한 규칙을 통하여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893. 가변적인 상황
적대행위가 지속되는 한, 교전국과 중립국간의 상황은 변화될 수 있다 (예: 중립영역에 대한 침해가 전혀 없거나 경미한 하위급 적대행위기간, 중립국 영역에 대한 증가된 침해로 연결되는 상위급 적대행위기간).

894. 중립정책의 필요성
통제수단은 특정한 상호 상황에 적용하여야 한다. 그것은 충돌의 발전에 따라 변화가능하여야 한다.
교전당사국과 중립국은 모두 관련된 모든 기구와 군대에 의한 행동과 행위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중립정책을 필요로 한다.
중립정책의 기본목적은 중립국을 적대행위로부터 지키기 위함에 있다.

제 2 절 중립국의 조치

895. 중립정책
중립국의 중립정책은 그 영역이 교전당사국, 특히 그 군대에 의해 존중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896. 중립의 선언
중립국의 법적 지위는 그 자신이나 교전당사국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선언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897. 국가영역에 대한 접근
영해와 영공에 대한 접근은 중립국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적절한 정보가 교전당사국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898. 군대를 위한 명확성의 필요
군대는 평시, 전시 및 중립의 경우에 동일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언제부터 그들에게 중립법이 적용되기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립국 고위당국은 그 군대에게 알려진, 내부적으로 적용가능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899. 군사적 수단의 유연한 사용
중립정책은 군사적 수단의 유연한 사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사용은 상황에 적용하여야 한다 (예: 중립영역을 상대로 한 고립적이고 우발적인 침해에 대한 개별적인 경고와 무력시위, 점증하는 중요 침해에 대한 일반적 경고와 발전적인 무력의 사용).

900. 지침, 명령
국경지역부대, 해안경비부대와 영해 및 영공 감시 임무를 지고 있는 부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예: 비상상황)에 대한 지침과 명령이 주어

져야 한다.

제 3 절 교전당사국의 조치

901. 중립정책 교전당사국의 중립정책은 중립국 영역에 대한 존중, 특히 그 군대가 중립 영역에 침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902. 국경에 관한 정보 교전당사국에 대해서는 중립국 국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903. 지침, 명령 중립영역에 대한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중립영역 주변에서의 군대의 행위에 대한 지침과 명령이 주어져야 한다 (예: 중립영역에 대한 접근금지, 실수로 중립영역을 관통했을 때 취해야 할 태도, 중립영역에서 전투행위에 가담되었을 경우에 취해야 할 태도, 중립영역으로부터의 즉각 퇴거).

제 4 장 중립영역에서의 전투행위

904. 원칙 (H.V, I H. XIII, 1, 25) 교전당사국에 의한 중립영역에서의 모든 전투행위는 중립법 위반이다. 중립법 위반은 순전히 우발적일 수 있다. 위반과 그에 대한 대응조치의 상승작용을 피하기 위하여 중립영역내에서 전투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양측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905. 적용법 (H.V, 10 H. XIII, 26) 중립영역에서 교전당사국 군대와 중립국 군대간에 발생하는 전투행위는

중립법에 의해 규율된다. 거기에는 공식적인 전쟁이 없고 따라서 아군과 적군의 관계도 없다.

906. 대항해야 할 중립국의 의무 (H.V, 10 H. XIII, 26) 교전국에 의한 중립영역 침해를 중단시킬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중립영역에 들어온 교전군대에 대한 중립적 전투행위는 중립법과 양립하는 반작용일뿐 아니라 그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다.

907. 반작용을 받아들여야 할 위반국의 의무 (H.V, 10 H. XIII, 26) 중립영역을 침해한 교전당사국과 그 군대는 중립국과 그 군대의 반작용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908. 중립적 반작용: 경고 중립영역에 대한 임박한 또는 행해지고 있는 침해에 대한 첫번째 반작용은 경고이다. 이러한 경고는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909. 중립적 반작용: 비례성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중립군대의 반작용은 항상 그 중요성에 비례하여야 한다.

910. 중립적 반작용: 종료 중립국에 의한 반작용은 중립영역에 대한 침해가 끝날 때까지만 지속되어야 한다.

부록I. 특수무기에 관한 특별조항

제 1 장 서론

911. 원칙

전투수단과 그 사용에 관한 규칙은 기본적으로 전투원 및 군사목적물과 민간인 및 민간목적물의 근본적인 구별에 기초한다.

912. 사용 자제

교전당사국과 그 군대는 다음과 같은 무기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 1)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무기
- 2) 정밀성의 결여 또는 그 효과로 인해 군인과 민간인에게 차별없이 영향을 미치는 무기
- 3) 그 해로운 효과가 시공(時空)에 걸쳐 사용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무기

913. 비례성

특수무기의 사용에 관하여 비례의 원칙은,

- 1) 그 사용이 금지되는지 여부(제2장), 또는
- 2)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의 특별조건(제3장 내지 5장)을 결정하는데 적용된다.

914. 규칙의 적용가능성

특수무기에 관한 특별한 규칙들은 서로 다른 조약 속에 들어 있다.

모든 국가를 구속하는 국제관습법도 몇몇 무기의 사용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모든 국가가 같은 조약에 의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국가는 기

존의 조약에 관하여 독자적인 해석 또는 유보조건부로 이에 가입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수무기의 사용을 규율하는 특별규정의 적용가능성은 무력충돌의 모든 상황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915. 명백한 지침

모든 국가와 교전국가의 고위 당국은 그 군대에 대해 무기사용에 관하여 명백한 지침을 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주어진 충돌상황 속에서의 무기사용을 규율하는 특별원칙의 적용가능성을 명확히 해주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제 2 장 금지사항

916. 400그램 이하의 폭발성 발사무기 (St. Petersburg)

400그램 이하인 발사무기의 사용은 폭발성이거나 또는 파열성 내지 가연성 물질로 충전되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금지된다.

917. 확산탄(擴散彈) (H. Decl.)

인체내에서 쉽게 확산되어 치명적인 탄환의 사용은 금지된다.

918. 독 또는 독을 넣은 무기 (H. IV. R. 23)

독 또는 독을 넣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919. 가스, 생물무기 (G. BC)

다음과 같은 전투수단의 사용은 금지된다.

- 1) 질식, 독, 기타 가스
- 2) 이와 유사한 액체, 물질, 또는 장치
- 3) 세균을 사용한 전쟁방법

920. 검출되지 않는 파편 (G.CW.P.I.)
 사람의 신체내에서 엑스레이 검사에 나타나지 않는 파편에 의해 상처를 입히는 것이 주요효과인 무기의 사용은 금지된다.

921. 폭발성 부비트랩 (G.CW.P.II,6)
 폭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접근하거나 교란하면 폭발하도록 특별히 고안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외관상은 전혀 해없는 휴대용 물건의 형태로 되어있는 부비트랩의 사용은 금지된다.

922. 과도한 효과를 지닌 부비트랩 (G.CW.P.II,6)
 지나친 상해나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도록 고안된 부비트랩의 사용은 금지된다.

923. 금지된 부착물이 있는 부비트랩 (G.CW.P.II,6)
 어떤 식으로든 다음과 같은 사람 또는 물건이 관련있거나 부착되어 있는 부비트랩의 사용은 금지된다.

- 1) 국제적으로 인정된 보호표장, 표시 또는 신호
- 2) 병자, 부상자 또는 사망자
- 3) 매장지, 화장지 또는 묘지
- 4) 의무시설, 의무장비, 또는 의무수송수단
- 5) 어린이 장난감 또는 어린이의 급양, 보건, 위생, 의복 또는 교육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제품이나 물건
- 6) 음식 또는 음료수
- 7) 명백히 종교적 성격을 갖는 물건
- 8) 문화적 또는 정신적 유산인 역사적 기념물, 예술작품 또는 예배장소
- 9) 동물 또는 그 시체

제 3 장 지뢰와 그 유사 무기

제 1 절 정의

924. 지뢰 (G.CW.P.II,2)
 “지뢰”는 지상, 지하, 또는 그 가까이나 기타 다른 표면에 놓여서 사람이나 차량의 출현, 접근, 또는 접촉에 의해 폭발하도록 고안된 탄약을 뜻한다.

925. 부비트랩 (G.CW.P.II,2)
 “부비트랩”은 외관상 해롭지 않은 물건에 접근하거나 또는 외관상 안전한 행동을 했을 때 예기치 않게 작동하여 사람을 살상하도록 고안되고 제작되거나 개조된 장치 또는 물건을 뜻한다.

926. 기타 장치들 (G.CW.P.II,2)
 “기타 장치들”은 사람의 손으로 설치된 물건 또는 장치로서 원격조종장치에 의해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적으로 작용해서 사람을 살상하거나 피해를 입히도록 고안된 것을 뜻한다.

927. 원거리 운반 지뢰 (G.CW.P.II,2)
 “원거리 운반 지뢰”는 대포, 로켓포, 박격포 또는 기타 유사수단에 의해 운반되거나 항공기로부터 투하된 지뢰를 말한다.

제 2 절 사용허용 조건

928. 지뢰, 부비트랩, 기타 장치들 (G.CW.P.II,4)
 원거리 운반되는 것을 제외한 지뢰, 부비트랩 그리고 다른 장치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인구밀집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다.

- 1) 그 지역이 적에게 속하거나 적의 통제하에 있는 군사목적물의 주위에 인접해 있을 때
- 2)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을 때 (예: 경고신호, 보호초, 경고, 울타리 설치 등)

929. 지뢰밭, 지뢰, 부비트랩 기록 (G.CW.P. II, 7)
다음의 위치는 기록되어야 한다.

- 1) 미리 계획된 지뢰밭
- 2) 부비트랩을 대규모로 사용하기로 미리 계획한 지역
- 3)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기타의 지뢰밭, 지뢰 및 부비트랩

930. 원거리 운반 지뢰 (G.CW.P. II, 5)
원거리 운반된 지뢰는 다음의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 1) 그 자신 군사목적물이거나 군사목적물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에서,
- 2) 그 위치가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거나, 또는 각개의 지뢰에 대해서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
- 3)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민간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선행경고를 하는 조건하일 것.

제 4 장 소이무기(燒夷武器)

제 1 절 정의

931. 소이무기 (G.CW.P. III, 1)
“소이무기”는 주로 목표물에 운반된 물질의 화학적 반작용에 의해 생성된 화염, 열, 또는 그 복합물의 작용을 통하여 물체에 불을 일으키거나 사람에게 화상을 입히도록 설계된 무기나 탄약을 뜻한다.

932. 소이무기의 예 (G.CW.P. III, 1)
소이무기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 수 있다: 화염방사기, 포개스, 포탄, 로켓, 수류탄, 지뢰, 폭탄, 기타 소이물질 용기.

933. 소이무기로 간주되지 않는 것 (G.CW.P. III, 1)
다음의 것들은 소이무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 1) 조명, 예광, 연막 또는 신호탄과 같이 부수적으로 소이효과를 가질 수 있는 탄약
- 2) 장갑관통 발사기, 분열포탄, 폭발성 폭탄 및 유사한 결합효과를 갖는 탄약처럼 그것이 갖는 소이효과가 특별하게 사람에게 화상을 입히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갑차, 항공기 및 설비 또는 시설 등의 군사목적물에 대해 사용되어서 별도의 소이효과와 함께 관통, 분열폭발효과를 갖도록 고안된 탄약

제 2 절 사용허용 조건

934. 공중으로 운반되지 않는 소이무기 (G.CW.P. III, 2)
공중으로 운반되지 않는 소이무기는,

- 1) 군사목적물이 명백하게 민간인 밀집지역과 분리되어 있고,
- 2) 전략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군사목적물에 소이효과를 한정시켜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용될 수 있다.

935. 공중으로 운반되는 소이무기 (G.CW.P. III, 2)
공중으로 운반되는 소이무기는 민간인 밀집지역 밖에 위치한 군사목적물에 대한 공격의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제 5 장 수뢰(水雷)

936. 닻 없는 자동접촉수뢰 (H.VIII, 1)
닻 없는 자동접촉수뢰는 통제를 떠난 한 시간 뒤에 무해(無害)하게 되는 경우 사용될 수 있다.

937. 닻 있는 자동접촉수뢰 (H.VIII, 1, 3)
닻 있는 자동접촉 수뢰는,

- 1) 고정상태가 해제되자마자 무해하게 되는 때

- 2) 평온한 항해를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가 취해졌을 때
- 3)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수뢰를 무해하게 하고, 수뢰가 관측 범위를 벗어나자마자 위험지역을 통과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용될 수 있다.

938. 어뢰 (H.VIII, 1) 어뢰는 그 목표물을 빚나갔을 때 무해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제 1 장 개인의 신분증명서류

제 1 절 신분증

- 939. 포로로 될 자:
 - 전투원 G.III, 17 권장규격: 6,5 x 10cm
 - 민간인 선원 및 항공 승무원 위와 같음
 - 군대를 수행하는 사람 G.III, 4 모델: G.III, Annex IV, A
- 940. 의무요원:
 - 육상의 군대를 수행하는 요원 G.I, 40 모델: G.I, Annex II
 - 해상의 군대를 수행하는 요원 G.II, 42 모델: G.II, Annex
 - 임시로 육상의 군대를 수행하는 요원 G.I, 41 이수한 특수 의무교육을 기재한 일반신분증
- 941. 군중요원:
 - 육상의 군대에 수반하는 요원 G.I, 40 모델: G.I, Annex II
 - 해상의 군대에 수반하는 요원 G.II, 42 모델: G.II, Annex
 - 민간인(영구 또는 임시) G.P. I, 18 모델: G.P. I, Annex I, 그림1
- 942. 민방위대요원 G.P. I, 66 모델: G.P. I, Annex I, 그림3

부록II. 신분증명

제 1 장 개인의 신분증명서류

제 1 절 신분증

- 939. 포로로 될 자:
 - 전투원 G.III, 17 권장규격: 6,5 x 10cm
 - 민간인 선원 및 항공 승무원 위와 같음
 - 군대를 수행하는 사람 G.III, 4 모델: G.III, Annex IV, A
- 940. 의무요원:
 - 육상의 군대를 수행하는 요원 G.I, 40 모델: G.I, Annex II
 - 해상의 군대를 수행하는 요원 G.II, 42 모델: G.II, Annex
 - 임시로 육상의 군대를 수행하는 요원 G.I, 41 이수한 특수 의무교육을 기재한 일반신분증
- 941. 군중요원:
 - 육상의 군대에 수반하는 요원 G.I, 40 모델: G.I, Annex II
 - 해상의 군대에 수반하는 요원 G.II, 42 모델: G.II, Annex
 - 민간인(영구 또는 임시) G.P. I, 18 모델: G.P. I, Annex I, 그림1
- 942. 민방위대요원 G.P. I, 66 모델: G.P. I, Annex I, 그림3

943. 문화재보호담당자 H. CP. R, 21 모델: H. CP. R, Annex

944. 위험한 임무수행중인 기자 G. P. I, 79 모델: G. P. I, AnnexII

제 2 절 인식표

945. 포로로 될 사람: G. I, 16 모양: 이중 또는
 --전투원 G. II, 19 단일인식표
 --민간인 선원 및 항공승무원
 --군대를 수행하는 사람

946. 군의무요원 위와 같음

947. 군중요원 위와 같음

제 3 절 내용

948. 신분증, 인식표: 최소내용
 원칙적으로 신분증과 인식표는 국적 외에 포로가 신분받았을 때 답변하
 여야 할 아래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개인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
 다.

- 1) 성명
- 2) 계급
- 3) 생년월일
- 4) 군번, 또는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한 정보

949. 신분증: 선택적인 추가자료
 요구되는 최소한의 내용 외에, 신분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시
 킬 수 있다.

- 1) 출생지
- 2) 혈액형

3) 신분확인을 위한 신체적인 자료(예: 키, 눈색깔, 머리색깔, 기타
 특이점)

4) 직능과 소속

950. 인식표: 선택적인 추가자료
 요구되는 최소한의 내용 외에, 인식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시
 킬 수 있다.

- 1) 출생지
- 2) 혈액형

제 4 절 신분증에 관하여 권장되는 추가자료

951. 소지자의 필요
 신분증에 여백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소지자의 이익을 위하여 전쟁법에
 관한 약간의 자료를 추가하여야 한다.
 정확한 행위는 적절한 훈련과 명령, 제재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모든 전투원들의 수중에 전쟁법을 요약한 종이가 있을 필요는 없다. 왜
 냐하면 어느누구도 즉시 행동하거나 반사적으로 행동하여야 할 경우에
 그것을 읽을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전투원이 적에게 포획된다면 그는 새로운 상황과 자신의 권리
 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할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신분증에 요약
 해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952. 신분받을 경우의 포로의 의무에 관한 언급
 신분증에 여백이 남아 있을 경우, 포로가 질문받았을 경우 오직 성명,
 계급, 생년월일 및 군번 만을 신분증에 기록된 대로 답변할 의무가 있
 음을 언급하여야 한다.

953. 포로에게 그 법적 상황을 알려야 할 억류국의 의무에 관한 언급
 신분증에 여백이 더 남아 있을 경우,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제네
 바협약의 전문(全文)과, 포로에 대한 규칙, 명령, 통고 및 출판물을 포

로가 사용하는 언어로 게시할 수용소 당국의 의무에 관하여 언급하여야 한다.

제 2 장 식별표지

제 1 절 서론

954. 목적

식별표지는 기본적으로 보호적 의미를 갖는다.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 보이게 하며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보호받을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955. 국제조약에 의해 규정된 표지

국제조약에 의해 규정된 표지는,


- 1) 세계적인 사용을 위해 합의되었거나 (예: 의무표지, 민방위표지, 문화재표지, 위험한 물리력을 가진 작업 및 시설물, 휴전 기(旗)),
- 2) 지역적인 사용을 위해 (예: 예술적 및 과학적 기구와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에 관한 1935년 와싱턴조약에 의해 규정된 역사적 기념물표지) 합의된 것들이다.

956. 특별표지

특별히 선택된 식별표지는,

- 1) 적에게 통고되거나(예: 종교행사장, 기념물의 위치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합의된 표지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 2) 적대당사국에 의해 합의되어야 한다(예: 방어되지 않는 장소, 비무장지대).

제 2 절 종류

957		G. I, 38 G. II, 41 G.P. I, 18	군 및 민간 의무지원 군중요원 민간 의무지원 또는 민방위를 위한 민간종교요원
958		G. I, 44	국제적십자사의 조직들
959		G.P. I, 66	민방위
960		H. CP. 16, 17	표시된 문화재: 일반보호 문화재보호요원
961		H. CP. 16, 17	표시된 문화재: 특별보호
962		G.P. I, 56	위험한 물리력을 가진 작업과 시설: 댐, 독, 원자력발전소
963		H. IV. R, 32	백기(협상과 항복을 위해 사용되는 휴전기)
964	적에게 통고되는 것	H. IV. R, 27	종교행사 장소, 역사적 기념물, 박물관 등: 육전
965		H. IX, 5	종교행사 장소, 역사적 기념물, 박물관 등: 해전
966		Washington, 3	역사적 기념물, 박물관 등
967		G. IV, Annex 1	병원과 안전지대 또는 장소
968	적대당사국 간의 합의에 의한	G.P. I, 59 G.P. I, 60	방어되지 않는 장소 비무장지대

제 3 절 사용

969. 규격 (G.P. I, Annex I, 3)
식별표지는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대로 적절한 대형의 규격이어야 한다.

970. 모양 (G.P. I, Annex I, 3, 15)
두가지 색으로 된 식별표지는 두 색의 표면이 가급적 동일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안 쪽에 있는 색의 표면이 너무 작으면 일정한 거리에서는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예: 의무(醫務)표지인 적십자와 적신월모양은 백색 바탕위에서 충분히 커야 하고, 민방위를 나타내는 주황색 바탕 안의 청색 삼각형도 마찬가지다).

971. 설치 (G.P. I, Annex I, 4)
식별표지는 가능한한 평면 또는 깃발에 표시하여야 한다.
식별표지는 사람이나 물건의 가장 큰 쪽을 덮어 가리도록 하여야 한다(예: 신체의 등부분, 트럭의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선박의 선체꼭대기까지의 수선(水線).
표지는 그 배경으로부터 명백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972. 사방으로부터의 가시도(可視度) (G. I, 42 G. II, 43 G. IV, 18 H. CP. R, 20 G. P. I, 59, 60 G. P. I, Annex I, 4, 15, 16)
식별표지는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대로 1) 가능한 많은 방향에서, 2) 가능한 멀리에서 명백히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표지는 충분한 양이 사용되고 부착되어야 한다(예: 선박의 측면, 선수, 선미, 갑판, 병원경내의 공간, 거대한 문화재, 방어진지 않는 장소 또는 비무장지대).

973. 야간 또는 가시도가 낮을 때 (G.P. I, Annex I, 3, 15, 16)
야간, 또는 가시도가 감소되어 있을 때는 식별표시를 채색하거나 조명할 수 있다.

식별표지는 기술적인 탐지수단에 의해 분간될 수 있는 자재(예: 형광반사물질)로 만들 수 있다.

974. 상세: 요원 (G.P. I, Annex I, 4, 15)
특별히 전투위험에 노출되는 요원(예: 전투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무 또는 종교요원, 민방위요원)은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 식별표지가 부착된 모자와 피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975. 상세: 병원선 (G. II, 43 G.P. I, 23)
병원선에는 의무표지인 적십자 또는 적신월을 백색 바탕에 진한 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식별신호

제 1 절 서론

976. 목적 (G.P. I, 18, 66)
식별신호는 신분확인 가능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예: 의무광선신호, 의무레이다신호를 통한 장거리 가시도의 확보).
그것들은 우선적으로 교통수단을 위한 것이다(특히 선박과 항공기를 위한 장거리 신호).

977. 원칙 (G.P. I, 18, 66)
식별신호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식별신호에 추가되는 것이다.

978. 임시 의무항공기 (G.P. I, 18 G.P. I, Annex I, 5)
시간의 부족 또는 그 특성상 식별표지를 부착할 수 없는 임시 의무항공기는 식별신호만을 사용할 수 있다.

979. 사용 (G.P. I, 18, 66)
식별신호는 유사한 식별표지에 관해 책임을 지고있는 권한있는 군 또는 민간당국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제 2 절 의무 광선(光線)신호

980. 정의 (G.P. I, Annex I, 6)
의무광선신호는 깜빡거리는 청색광선으로 이루어진다.
권장되는 청색은 다음과 같은 배합으로 얻어진다.

$$\text{녹색 경계} \quad y = 0.065 + 0.805x$$

$$\text{백색 경계} \quad y = 0.400 - x$$

$$\text{자색 경계} \quad x = 0.133 + 0.600y$$

깜빡거리는 빈도는 분당 60내지 100회가 되어야 한다.

981. 사용 (G.P. I, Annex I, 6)
의무광선신호는 전술적 상황이 허용할 때는 가급적 많은 방향으로부터 가급적 멀리서도 보일 수 있어야 한다(예: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면(全面)신호, 선박의 선체 상부의 가급적 높은 곳에 설치하는 신호).

제 3 절 의무 무선(無線)신호

982. 정의 (G.P. I, Annex I, 7)
의무무선신호는 국제전신협정의 부속서인 무선규정 제2장 제40조에 따라 보내지는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에 선행하는 우선적 식별신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983. 의무수송수단: 원칙
원칙적으로 의무수송수단의 우선적 식별신호는 "MEDICAL" 이다.

984. 의무수송수단: 해안구조선
해안구조선은 우선적 무선신호로서 "RESCUE CRAFT"를 사용한다.

제 4 절 의무 레이더신호

985. 권고 (G.P. I, Annex I, 8)
병원선과 항공기는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그리고 레이더를 장착한 지상국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별신호를 송출하는 자동무선레이더를 장착하여야 한다.

986. 의무선박
의무선박은 국제전신협정 부속서인 무선통신규정 제2절 제 40조와 국제해사기구(國際海事機構)의 국제신호규정 제5편 제14장에 따라 "YYY"그룹으로 이루어진 레이더신호와 호출부호 또는 선박의 식별수단으로 인정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987. 의무항공기 (G.P. I, Annex I, 8)
의무항공기는 1944년 국제 민간항공에 관한 시카고협약 제10부속서에 규정된 보조탐색레이더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절 의무 수중음향신호

988. 권고
병원선은 잠수함에 의한 신분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중 신호를 송출하는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989. 정의
의무 수중음향신호는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규정 제6편 제 14장에 따라 적절한 음향주파수(예: 5kHz)의 모스부호로 보내지는 "YYY"그룹과 호출부호 또는 선박의 식별수단으로 인정된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제 6 절 기타 신호

990. 국제적으로 승인된 신호 (G.P.I, Annex I, 10, 11)
의무시설과 의무수송수단은, 국제전신연합,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해사기구에 의해 제정된 약호와 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991. 특별신호: 원칙
식별표지에 관하여 교전당사국은 다른 식별신호를 합의할 수 있다.

992. 특별신호: 민방위 (G.P.I, 66)
교전당사국간에 합의된 민방위의 신분확인을 위한 식별신호는 민방위 식별표지에 부가하여 사용될 수 있다.

지휘관을 위한 전쟁법요약

개 요

모든 국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법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군대내의 모든 지휘관은 그의 책임범위내에서 전쟁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지휘관을 위한 전쟁법요약에는, 수행하여야 할 전술적 임무를 가지고 있는 지휘관이 반드시 알고 행하여야 할 사항을 국제조약의 참조없이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 요약은 훈련과 실전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제 1 편 참조용어

1. 전쟁법

전쟁법은 전투행위와 전투로 인한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국제규정으로 구성된다.

2. 전투원

의무 또는 군중요원이 아닌 군대의 구성원은 전투원이다. 그들은 복장이나 식별표지 또는 최소한 공개적으로 무기를 소지함으로써 그 자신을 구별한다.

3. 포로

적에게 체포된 전투원은 포로가 된다.

4. 군사목적물

군사목적물은 전투원, 군사시설과 수송수단, 장소, 전술적으로 관련있는 지형 등을 포함한다.

5. 민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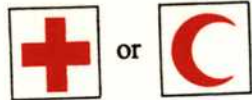
민간인은 군대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6. 민간목적물

민간목적물은 군사목적물로 사용되지 않는 물건들이다.

7. 특별히 보호되는 사람과 물건

전쟁법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과 물건을 특별히 보호한다. 식별표지는 특별히 보호되는 사람과 물건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군 및 민간 의무지원
 군종요원
 민간 종교요원: 민간의무지원 또는 민방위



민방위



표시된 문화재: 일반보호
 문화재보호를 위한 요원



표시된 문화재: 특별보호



위험한 물리력을 가진 작업과 시설

제 2 편 무력충돌의 통제

8. 전투원

전투원은 직접 적대행위에 참가할 수 있다.
 전투원은 공격당할 수 있다.

9. 군사목적물

군사목적물은 공격당할 수 있다.

10. 민간인

민간인은 직접 적대행위에 참가할 수 없다.
 민간인은 그들이 직접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한 공격당하지 않는다.

11. 민간목적물

민간목적물은 군사목적물로 되지 않는 한 공격당하지 않는다.

12. 특별히 보호되는 사람

특별히 보호되는 사람은 직접 적대행위에 참여할 수 없고 공격당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3. 특별히 보호되는 물건
특별히 보호되는 물건은 군사목적물이 될 수 없으며 공격당할 수도 없다.

14. 특별히 보호되는 물건: 표시된 문화재
표시된 문화재에 대한 공격면제는 특별한 군사상의 필요가 있을 때는 무시될 수 있다.
이 경우 적어도 사단장급 이상의 지휘관에 의해 확립된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이 요구된다.

15. 인간적인 대우
민간인, 포로 및 포획된 군의무요원, 군중요원은 존중되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16. 부상자, 난선자
부상자와 난선자는 그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

17. 인질
인질의 억류는 금지된다.

18. 파괴, 약탈
임무수행시에 파괴는 요구되지 않으며 약탈은 금지된다.

제 3 편 지휘책임

제 1 절 일반책임

19. 전쟁법의 존중
전쟁법의 존중은 명령과 규율의 문제이다.
지휘관은 부하들이 전쟁법하의 의무를 잘 알고 그것들을 존중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0. 전쟁법 위반
지휘관은 전쟁법 위반이 종식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또는 형사소추가 행해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 2 절 전쟁법 교육훈련

21. 책임
지휘관은 적절한 전쟁법 교육의 책임이 있다.

22. 일상적인 활동과의 통합
전쟁법교육은 일상적인 군사활동에 통합되어야 한다.

23. 전쟁법교관
하급자에 대해 일상적인 교관인 상급자는 전쟁법교육에 있어서도 교관이다.

제 3 절 조직

24. 책임
지휘관은 전쟁법적용에 관한 부하들의 능력과 책임을 확립하여야 한다.

25. 의무지원
지휘관은 의무요원에 의한 식별표지와 식별신호의 사용 및 무기의 사용을 계획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26. 민간당국과의 협력
지휘관은 협조권한을 확립하고 우선순위를 천명함으로써 민간당국과의 협력을 계획하여야 한다.

제 4 절 특수상황

27. 다른 군대간의 전쟁
다른 군대간에 전투가 발생했을 때에는, 상급지휘관은 그 부하들에게 적절한 행동지침을 주기 위해 적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8. 비정상적인 상황과 거리
지휘관은 고립되어 작전을 수행하거나 군수기지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를 위하여 적절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

제 4 편 지휘권행사

제 1 절 임무

29. 통상지휘절차
지휘권행사는 임무에 의해 시작되고, 통상의 지휘절차를 따라야 한다.

30. 존중
임무는 존중되고 완수되어야 한다.

제 2 절 결정요소

31. 정보수집
정보수집에 있어서, 지휘관은 의무시설의 성격과 위치, 문화재, 댐, 제

방과 원자력 발전소 및 민간인 밀집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복을 착용하거나, 또는 전투원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하는 정보수집은 적법한 것이다.

간첩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들은 포로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32. 조사의 제한: 적 전투원
체포된 전투원은 질문받을 수 있으나, 개인적인 신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만 있다.

33. 조사의 제한: 적 민간인
적 민간인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될 수 없다.

34. 조사의 금지: 의무수송
의무수송수단은 정보자료를 수집하거나 수송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35. 예방
지휘관은 민간인 사상자 및 피해를 피하고 최소한으로 극소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예방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36. 전술상황
전술적 상황에 따라 특별한 행동과 활동을 할 수 있다. 그것들은 임무가 허용하는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37. 군사적 필요
군사적 필요는 전쟁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군사적 필요는 임무완수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수단만을 정당화 할 수 있다.

제 3 절 의사결정

38. 평가

지휘관은 그의 평가에 있어서 그 자신과 적의 행위가 민간인과 민간목적물에 대해 미칠 일반적인 영향과 특별히 보호되는 사람과 물건에 미칠 특별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39. 결정

지휘관은 민간인의 사상자 및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선택하여야 한다.

40. 부하들에 대한 임무

부하들에게는 전쟁법을 따라서 완수할 수 있는 임무가 주어지야 한다.

제 4 절 시행의 통제

41. 목적

통제를 통하여, 지휘관은 그 부하들이 전쟁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가운데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2. 조정

통제는 임무가 허용하는 한, 민간인 사상자 및 피해를 줄이는 행동가운데 행해지는 조정을 포함한다.

제 5 편 작전행위

제 1 절 작전행위 일반

43. 민간인과 민간목적물의 보호

민간주민과 민간인, 민간목적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계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4. 필요한 정보

지휘관은 민간인 집중지역, 중요한 민간목적물 및 특별히 보호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5. 무기

무기와 전투수단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민간인 또는 민간목적물에 대한 불필요한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선택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는 사용할 수 없다.

46. 기망행위

위장, 모조시설, 거짓 작전과 거짓정보 등의 기망수단은 허용된다. 적의 신뢰를 유도하여 보호받는 상태를 가장하는 것은 금지된다. 식별표지나 휴전표시 깃발의 오용, 항복이나 부상에 의한 무능력의 가장, 적의 제복이나 깃발의 사용 등은 금지된다.

47. 방패의 금지

군부대, 군의 이동, 군의 거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인이나 거주지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48. 보호지대

보호지대나 지역 (병원지대, 기념물 집중지역, 비무장지역, 비방어지역)이 합의된 경우, 관할지휘관은 그러한 지역부근이나 그쪽으로의 행동에 대한 지침을 주어야 한다.

49. 민간당국과의 협력

민간인에 의해 취해져야 할 수단에 관하여 지휘관은 적당한 민간당국과의 협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 2 절 공격행위

50. 목표선정

전술적으로 동등한 선택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격방향, 목적물, 또는 목표는 인간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51. 현저한 목적물

민간목적물내 또는 그 부근에 있는 현저한 목적물 또는 목표는 분리되어 공격되어야 한다.

52. 확증

목적물이나 목표의 군사적인 특성은 정찰과 목표확인에 의하여 확증되어야 한다.

53. 무기

민간인 사상자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투수단과 무기는 목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54. 경고

임무가 허용하는 경우, 공격방향이나 부여된 목표에 의해서 위험에 처하게 된 민간주민에게는 적절한 경고를 해야한다.

55. 표시된 문화재

표시된 문화재에 대한 공격면제는 임무수행상 절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철회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및 공격면제철회에 관한 사전경고가 행해져야 한다.

56. 공격 중의 통제

만일 공격 중에 그 목표가 군사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지휘관은 그 목표를 벗어나거나 공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 3 절 방어행위

57. 방어위치의 선택

동등한 전술적 선택에 있어서 방어위치는 민간인과 민간목적물을 가장 적은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58. 무기

민간인의 희생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투의 수단과 무기는 방어위치환경에 적합해야 한다.

59. 민간인의 이동

위험에 처한 민간인과 민간목적물은 군사목적물로부터 이동되어야 한다.

60. 특별히 보호되는 물건

특별히 보호되는 물건은 명백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61. 경고

임무가 허용하는 한, 민간인을 위험하게 하는 방어수단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경고가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 전투행위에 있어서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2. 표시된 문화재

임무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표시된 문화재에 대한 공격면제가 철회될 수 있다. 그 철회는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 경고와 식별표지의 제거는 적에게 상황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어야 한다.

제 4 절 이동과 주둔위치

63. 이동

민간목적물 부근에서의 이동(및 이동중 정지)은 가능한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64. 부대의 주둔위치
전투부대의 주둔위치는 군사목적물과 민간목적물의 근접을 피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65. 불가피한 근접
군사목적물과 민간인, 민간목적물이 불가피하게 근접하게 되는 경우, 지휘관은 다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1) 민간인과 민간목적물의 중요집중지역 부근에는 단지 소규모의 군사목적물이 위치하여야 한다.
- 2) 대규모의 군사목적물은 민간인과 소규모 민간목적물의 덜 중요할 집중지역 부근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 6 편 전투행위

제 1 절 전투

66. 목적물과 목표
전투행위에 있어서 목적물과 목표의 군사적 특성은 확인되어야 한다. 전투행위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과도한 민간인 사상자나 피해를 피하기 위하여 임무가 허용할 때는 언제나 대체 목적물과 목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67. 경고, 권고
민간주민이나 민간인들의 이동이나 대피소에 관하여 특별 경고 또는 권고를 발하여야 한다.

68. 특별히 보호되는 사람, 시설 및 교통수단
특별히 보호되는 사람, 시설 및 교통수단의 순수한 활동이나 사용은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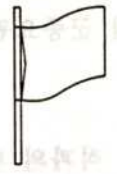
인되어야 한다.

69. 표시된 문화재
공격면제가 철회된 표시된 문화재라 할지라도 임무수행이 허용하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70. 보호지대
보호지대는 존중되어야 한다. 보호지대가 적에게 넘어가거나 혹은 적으로부터 접수되었을 경우, 지역관할 지휘관은 그곳에서 전투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71. 희생자 수색
임무가 허용하는 경우 부상자, 난선자 및 전사자는 수색되고 모아져야 한다.

72. 전투에서 벗어난 적, 항복
전투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전투원 (항복, 부상, 난선자, 조난당한 낙하자)은 공격당해서는 안된다.



73. 민간당국과의 협력
현장에서 민간당국과 협력하는 것은 민간인과 민간목적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2 절 포획된 사람과 물건

74. 적 전투원
포획된 적전투원은 무장해제하고 포로로서 인간적으로 대우하여 후방으로 후송하여야 한다.

75. 부상자 및 난선자

부상 혹은 난선한 적 전투원은 돌보아지고 후송되어야 한다.

76. 사망자

원칙적으로 사망자는 식별되어 개별적으로 매장, 화장 또는 수장되어야 한다. 사망자의 개인유품은 모아서 후송하여야 한다.

77. 적 군의무지원

포획된 적 군의무요원, 시설, 수송수단은 부상자와 난선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한도내에서 그들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장요원은 해제되어야 한다. 부상자와 난선자를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요원과 시설 및 수송수단은 인계되어야 한다. 의무요원은 후방으로 후송되어야 한다.

78. 적 군중요원

포획된 적 군중요원은 포획된 적 군의무요원과 유사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제 3 절 적과의 비적대적 접촉

79. 정보, 경고, 권고

민간인이나 민간목적물에 대한 위협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서 또는 전쟁법의 존중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에게 정보, 경고, 권고를 보낼 수 있다.

80. 전투의 중지

지역적인 전투의 중지와 기타 다른 합의가 적대군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다. 하급부대 단계에서는 이러한 합의는 간단하게 육성, 라디오 또는 백기 등 구두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급부대 단계에서 보다 긴 전투중지를 위해서는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4 절 전투후의 조치

81. 평시상태로의 복구

임무가 허용하는 즉시, 임시로 이동되었던 사람과 물건은 원래 있던 장소로 되돌아 오고, 전투지역은 그들의 원래상태로 복구되어야 한다.

82. 민간당국과의 협력

임무가 허용하는 즉시, 지역관할 부대장은 민간당국에 협조제의를 하여야 한다.

제 7 편 수송

제 1 절 수송행위

83. 수송원칙

군, 의무, 민간수송은 임무가 허용하는 한 분리되어야 한다.

84.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일반통로와 하역지역 때문에 분리수송이 불가능한 경우 군, 의무, 민간요원 및 시설, 수송수단의 동시출현은 가급적 짧게 제한되어야 한다.

제 2 절 포획된 사람과 물건의 후송

85. 후송원칙

원칙적으로, 포획된 적 전투원은 자신의 아군 요원의 수송과 유사한 조건하에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86. 포로의 후송

포로는 명령계통이나 보급계통을 통하여 집결장소 또는 그곳으로부터 포로수용소로 후송되어야 한다.

87. 통과수용소
포로가 통과수용소를 지날 때, 그들의 수용소 체류는 단시간이어야 한다.

88. 부상포로의 후송
부상포로는 의무후송이나 보급계통을 통해서 후송되어야 한다.

89. 시체의 후송
현장에 매장 또는 소각되지 않은 시체는 그들이 식별되어 매장될 수 있는 경로나 장소로 후송되어야 한다.
선박에서 상륙된 시체도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한다.

90. 포획된 의무요원, 수송수단 및 물건
부상자를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포획된 적 의무요원, 수송수단 및 물건은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후송되어야 한다.

91. 포획된 군중요원의 후송
포획된 적 군중요원은 포획된 군 의무요원과 마찬가지로 후송되어야 한다.

92. 심문
심문시, 포로(와 포획된 군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는 그들의 계급, 출생일, 군번 또는 동등한 정보만을 밝힐 것을 강요당할 수 있다.

93. 신분확인
임무가 허용하는 한 빨리, 포로(와 포획된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의 신분이 확인되어야 한다.

제 3 절 보급

94. 보급원칙
의료보급품을 제외하고 군에 보급된 물건 및 물자는 그것을 운반하는 요원과 수송수단으로부터 독립해서 군사목적물이 된다.

95. 의무보급
군 의무보급은 원칙적으로 의무보급계통을 따라 군 의무요원 및 의무수송수단에 의해 이동되어야 한다.

제 4 절 의무수송

96. 의무수송원칙
의무수송은 보급과 후송을 위한 의무수송계통과 경로를 따라야 한다.

97. 군사목적물로부터의 거리
의무수송은 군사목적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행해지고 유지되어야 한다.

98. 신분확인
식별표지와 신호는 전술적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

- 1) 전투지역: 표지는 보다 작은 것을 많은 위장을 한 뒤 사용하고, 신호는 적게 사용하거나 또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다.
- 2) 후방지역: 보다 큰 표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며, 신호의 사용에 대해서도 위장이나 제한을 보다 적게 할 수 있다.

제 8 편 후방지역

99. 포로수용소

포로수용소는 전투행위에 노출된 지역에 위치해서는 안된다
군사적 고려가 허용하는 한 포로수용소는 "PW" 또는 "PG" 문자로 표시
되어야 한다.

100. 민간인 억류수용소

민간인 억류수용소는 전투행위에 노출된 지역에 위치해서는 안된다.
군사적 고려가 허용하는 한 수용소는 "IC" 문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101. 민간당국과의 협력

지휘관은 민간주민을 위한 보호와 경계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당국
과의 협조를 계획하여야 한다.

102. 민간당국의 지원

지휘관은 주어진 임무가 허용하는 때에는, 민간의무지원, 민방위 및 문
화재보호임무 등의 완수를 촉진시키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 9 편 점령

103. 점령원칙

점령국은 공중의 생명,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공사업을 위하여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여금 노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04. 주민

점령국은 주민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
주민들은 점령국에 의해 초래된 어떤 변화에 의해서도 전쟁법이 보장하
고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105. 보안대책

점령국은 보안상 이유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해체된 점령지 군대의 억류
- 2) 주민들을 제한된 거주나 수용소에 거주시키는 일

106. 전투행위

점령지 주민들은 저항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러한 저항운동은 군대
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작전의 준비 및 실행, 그리고 연속적인 수단의 원칙은 점령지에 있어
서의 전투행위에도 적용된다.

제 10 편 중립

107. 불가침의 중립공간

중립국의 영토, 영해, 영공은 침해될 수 없다.

108. 교전국의 의무

교전국은 중립국의 영수(領水)를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나 중립국가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립국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다.

109. 중립국의 의무

중립국은 그 중립성을 존중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립국은 그 군대를 사용해서 침해에 대항할 수 있다.
중립국 군대의 행위는 항상 침해의 경중에 비례해서 행해져야 한다.

110. 교전국 군대의 억류

중립국의 영토에 들어오도록 허용되거나 중립국 영역에서 체포된 교전
국 군대의 구성원들은 적대행위 종료시까지 억류되어야 한다(예외: 탈출
포로와 부상 또는 병든 교전국 군대구성원들에 대한 특별규칙). (끝)

역자 후기

이 책은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태리 산 레모 소재 국제인도법연구소의 주임교수인 프레드릭 드 폴리넨 박사가 쓴 HANDBOOK ON THE LAW OF WAR FOR ARMED FORCES(ICRC, 1987)를 번역한 것이다.

제네바협약을 골간으로 한 국제전쟁법은 우리나라는 물론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제네바협약의 체약국으로서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고, 우리나라도 국방부훈령 제391호(1989.5.18) "전쟁법준수보장을위한규정"으로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참전한 바 있는 걸프전에서는 현대전에 있어서 전쟁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군에서 전쟁법교육은 체계화되지 못하고 또한 변한 자료조차 구비하지 못한 실정이다.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간한 제네바협약 및 그 의정서의 우리말 번역본과 그 해설서 등이 있으나 그 내용이 방대하고 수량도 제한되어 있어서 장병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전시에 전쟁법을 적용하고 준수하여야 할 의무있는 장병들을 위한 간결하고도 알기 쉬운 편람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효과적으로 전쟁법을 보급하기 위하여, 군법무관으로서 전쟁법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가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의 원본은 해마다 4-6차례 이태리 산 레모의 국제인도법연구소에서 개최되는 국제군사전쟁법 교육과정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제네바협약을 위시한 국제전쟁법의 내용을 적용되는 상황별로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협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더라도 그 적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일일이 근거조약을 명시함으로써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는 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전쟁법을 직접 적용하고 준수하여야 할 실무자들이 옆에 두고 참고하기에는 안성맞춤인 책이다.

번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고 용어는 이미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간한

제네바협약 및 그 의정서의 우리말 번역본을 기본으로 하여 이에 맞추도록 하였으나, 기왕의 역어중에서도 간혹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용어로 바꾸었다. 또한 순한글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옆에 같이 써줌으로써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전혀 전쟁법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가급적 쉬운 말로 번역하고자 하였으나 정작 끝내놓고 보니 처음의 의도대로 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이 책은 원래 1993년 봄 대한적십자사의 지원으로 동 적십자사의 인도법연구소에서 발간되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때문에 많은 부수를 발간하지 못해서 우리가 의도했던 바 장병을 비롯한 전쟁법실무자들에게 고루 배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한편 이 책의 발간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로부터 배포요청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순전히 장병을 위해서 공군본부 법무감실에서 이 책을 펴내게 된 것이다. 이 기회에 역자들은 다시 한번 초판을 검토하여 이해가 어렵거나 잘못 번역된 부분을 손질하는 한편 한 면에 들어가는 분량도 다소 줄여서 읽기에 부담이 없도록 조절하였다.

이 새로운 판의 편집을 도와준 공군본부 법무감실의 정선재 법무관께 감사드린다. 초판의 교정을 맡아 수고해 준 공군본부 법무감실의 강승준, 김환수 두 법무관, 편집작업을 도와 준 서경환 법무관께도 또한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이 조그마한 책자가 그간 간편한 편람이 없어서 쉽게 전쟁법에 접근하지 못했던 장병들에게 전쟁법에 대한 지식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 이상의 기쁨이 없을 것이다.

"평화를 원하는 자 전쟁을 대비하고, 전쟁을 대비하는 자 전쟁법을 익히라."

1993. 8.

역자 최영홍, 유재풍

역자 소개

최영홍 (崔永洪)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제3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공군본부 법무감실 검찰부장, 심판부장, 법무과장

국방부 검찰부장

현재 변호사

유재풍 (俞載豊)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졸업

(법학석사:LLM)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제4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국방부 군사법원 군판사, 검찰관

공군본부 법무감실 심판부장

현재 공군본부 법무감실 법무과장

1,000

제목 : 군대를위한 전 쟁 법

1993년 10월 2일 인 쇄
1993년 10월 5일 발 행
편집발행 : 공군본부 법무감실
인 쇄 : 공 군 교 재 창